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603

발의연월일: 2025. 1. 17.

발 의 자:정태호·이건태·이학영

황명선 • 박홍근 • 한준호

오기형 • 양문석 • 서영교

박민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위주로 실시되고 있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 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가중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제2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 실시지		
	역 내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부		
	여하여야 한다.		
<u>⑥</u>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		
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생	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	②		
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			
항 및 <u>제6항</u> 과 관련한 사항의	<u>제7항</u>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